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5
------------	------

발의연월일 : 2016. 11. 22.

발 의 자 : 이용호 · 신용현 · 주승용
정인화 · 장정숙 · 김삼화
홍문표 · 김태흠 · 김영춘
김부겸 · 이개호 · 이종배
유성엽 의원(13인)

제안이유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영세 어업인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분야여서 정부가 1975. 12. 3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하게 되었음.

그런데 정부는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의 연장을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연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어업인들이 더 이상 가두리양식어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연장이 불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두리양식어업인들에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어업인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함(안 제3조).

나.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의 조속한 보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

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피해어업인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9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 있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13조).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2. “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뜰·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를 말한다)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이하 “면허연장불허”라 한다)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 ①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면허연장불허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양식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 지급 결정
3.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
4. 그 밖에 위원장이 피해어업인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손실보상에 관련 있는 임원

3.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대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대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대책위원회는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①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상

제8조(보상금)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액, 시설물잔존가액, 어류매각손실액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신청기간은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고려하여 9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

야 한다.

② 피해어업인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의방법,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는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소멸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자는 제9조제4항의 결정서정본 (이)의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결정서정본을 말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별칙

제15조(별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